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50호(號) 1934(昭和 9)년 7월 11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61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4(昭和 9)년 7월 1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능금[林檎]
- 2 발 역(發 驛) 진지동(眞池洞), 진남포(鎭南浦)
- 3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1톤(噸) 당(當) 6원(圓) 30전(錢)
- 6 기 간(期 間) 1934(昭和 9)년 7월 11일부터  
1935(昭和 10)년 4월 30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소정(所定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해 특정구간(特定區間) 통계(通計) 5백  
톤(百噸) 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하고 또 이것을 수이출(輸利出)한 자  
(者)에 대(對)해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  
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할려(割戻)하는 것으로 함.  
나 본(本) 운임할려(運賃割戻)의 청구(請求)를 하고자 하는 자(者)는 철도  
성부산영업소(鐵道省釜山營業所)의 화물운송통지서(貨物運送通知書) 혹  
은 부산세관(釜山稅關)의 수출면허장[輸出免狀]으로써 그 수이출(輸移  
出) 사실(事實)을 증명(證明)해야 하는 것으로 함.  
다 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  
(條)제3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.